

|       |             |
|-------|-------------|
| 의안번호  | 2114844     |
| 의 퇴 인 | 임호선의원       |
| 회 답 일 | 2022.04.26. |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 청원경찰법(의안번호 2114844) 일부개정법률안

## 비용추계서 요약

### I. 재정수반요인

#### □ 청원경찰 직급 및 승진(제5조의2·제6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 승진, 보수산정 시 준용하는 경찰공무원 직급을 다음 표과 같이 규정

[표]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 현행            |         | 개정안           |     |         |
|---------------|---------|---------------|-----|---------|
| 재직기간(년)       | 보수산정 직급 | 재직기간(년)       | 직급  | 보수산정 직급 |
| 15년 미만        | 순경      | 9년 미만         | 청원경 | 순경      |
| 15년 이상 23년 미만 | 경장      | 9년 이상 17년 미만  | 청원장 | 경장      |
| 23년 이상 30년 미만 | 경사      | 17년 이상 24년 미만 | 청원사 | 경사      |
| 30년 이상        | 경위      | 24년 이상 30년 미만 | 청원위 | 경위      |
|               |         | 30년 이상        | 청원감 | 경감      |

### II. 비용추계 결과

#### □ 추가재정소요 : 향후 5년간 총 710억 2,500만원(연평균 142억 500만원)

[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백만원)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합계     | 연평균    |
|-----------------------------|--------|--------|--------|--------|--------|--------|--------|
| 청원경찰 직급 및 승진<br>(제5조의2·제6조) | 15,356 | 13,685 | 14,027 | 13,896 | 14,061 | 71,025 | 14,205 |

---

## 차 례

---

|                                  |   |
|----------------------------------|---|
| I. 비용추계 결과 .....                 | 1 |
| II. 재정수반요인 .....                 | 1 |
| III. 비용추계의 전제 .....              | 2 |
|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             | 3 |
|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 3 |
| 2. 청원경찰 직급 및 승진(제5조의2·제6조) ..... | 3 |
| 3. 추계 결과 .....                   | 5 |

---

## 일러두기

---

-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 I. 비용추계 결과

- 안 제5조의2 등에 따라 청원경찰의 직급과 승진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 153억 5,600만원, 2027년 140억 6,100만원 등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710억 2,500만원(연평균 142억 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백만원)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합계     | 연평균    |
|-----------------------------|--------|--------|--------|--------|--------|--------|--------|
| 청원경찰 직급 및 승진<br>(제5조의2·제6조) | 15,356 | 13,685 | 14,027 | 13,896 | 14,061 | 71,025 | 14,205 |

## II. 재정수반요인

- 청원경찰 직급 및 승진(제5조의2·제6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 승진, 보수산정 시 준용하는 경찰공무원 직급을 다음 표과 같이 규정

[표]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 현행            |         | 개정안           |     |         |
|---------------|---------|---------------|-----|---------|
| 재직기간(년)       | 보수산정 직급 | 재직기간(년)       | 직급  | 보수산정 직급 |
| 15년 미만        | 순경      | 9년 미만         | 청원경 | 순경      |
| 15년 이상 23년 미만 | 경장      | 9년 이상 17년 미만  | 청원장 | 경장      |
| 23년 이상 30년 미만 | 경사      | 17년 이상 24년 미만 | 청원사 | 경사      |
| 30년 이상        | 경위      | 24년 이상 30년 미만 | 청원위 | 경위      |
|               |         | 30년 이상        | 청원감 | 경감      |

### Ⅲ. 비용추계의 전제

- 2021년 12월 말 기준 재직 중인 청원경찰 9,990명이 2023년 이후 추계기간 동안 중도 퇴직 없이 재직하며, 재직기간이 31년에 도달한 경우만 다음연도에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
  - 신규 채용자의 경우 추계기간 5년 동안 보수산정 시 순경 계급을 유지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른 봉급의 차이가 없으므로 고려하지 않음
  - 청원경찰은 3호봉으로 시작하여 재직기간 1년마다 1호봉씩 증가하며 직급이 상승하는 경우 1호봉이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

[표 3] 재직기간별 청원경찰 현황: 2021년 12월 기준

(단위: 년, 명)

| 재직기간 | 인원  | 재직기간  | 인원  |
|------|-----|-------|-----|
| 0~1  | 760 | 16    | 205 |
| 1    | 676 | 17    | 210 |
| 2    | 726 | 18    | 175 |
| 3    | 946 | 19    | 129 |
| 4    | 331 | 20    | 98  |
| 5    | 281 | 21    | 102 |
| 6    | 375 | 22    | 85  |
| 7    | 264 | 23    | 119 |
| 8    | 272 | 24    | 186 |
| 9    | 226 | 25    | 194 |
| 10   | 201 | 26    | 282 |
| 11   | 205 | 27    | 266 |
| 12   | 279 | 28    | 283 |
| 13   | 273 | 29    | 352 |
| 14   | 285 | 30    | 287 |
| 15   | 248 | 31~   | 669 |
| 총계   |     | 9,990 |     |

자료: 경찰청

- 추계기간 동안 최근 3년(2020~2022년)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 1.7%를 적용한 경찰공무원 봉급표를 활용
  - 2022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와 경찰공무원 봉급표를 비교한 결과, 재직기간 15년 이상인 청원경찰의 봉급은 경찰공무원 봉급표의 98% 수준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개정안의 비용추계 대상은 청원경찰의 직급, 승진 관련 규정 변경에 따른 보수, 기관부담금 증가분

○ 대상자 수에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보수, 기관부담금 차이를 곱하여 산출

<비용추계 산식>

---

$$\text{추가재정소요} = \sum_t \sum_i (\text{대상자 수}_{i,t}^{1)} \times \text{증가분}_{i,t}^{2)})$$

이때,  $t$ 는 추계연도(2023~2027년),  $i$ 는 재직기간별 청원경찰 인원

1) 대상자는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직급 차이가 발생하는 청원경찰을 말하며, 연도별 재직기간별로 대상자 수를 산출

2) 증가분은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직급, 호봉의 차이로 발생하는 보수, 기관부담금을 말하며, 추계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의 직급별 보수는 최근 3년(2020~2022년) 공무원 평균 임금 상승률 1.7%를 적용하고 청원경찰의 보수는 경찰공무원 보수의 98%로 가정

---

### 2. 청원경찰 직급 및 승진(제5조의2·제6조)

#### 가. 2023년 추가재정소요

□ 개정안에 따라 청원경찰의 직급, 승진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2023년 추가재정소요는 153억 5,600만원으로 예상

○ 개정안에 따라 2023년 기준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직급 차이가 발생하는 대상자 수를 재직기간별로 산출하고, 재직기간별 현행법을 적용한 보수와 개정안에 따른 보수의 차이를 계산

－ 예시) 9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중인 청원경찰은 현행에 따르면 순경 12호봉을 적용받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경장 11호봉을 적용받게 되는데, 그 차액은 월 63,868원이고, 대상 인원은 272명(2021년 12월 기준 8년 이상 9년 미만)

[표 4] 대상자 수와 보수 증가분: 2023년

(단위: 명, 원)

| 재직기간 | 현행법 직급 호봉 | 개정안 직급 호봉 | 대상자 수<br>(a) | 보수월액 증가분<br>(b) | 추가재정소요(보수)<br>(=a×b×12) |
|------|-----------|-----------|--------------|-----------------|-------------------------|
| 9    | 순경12      | 경장11      | 272          | 63,868          | 208,463,846             |
| 10   | 순경13      | 경장12      | 226          | 70,885          | 192,239,849             |
| 11   | 순경14      | 경장13      | 201          | 76,987          | 185,692,403             |
| 12   | 순경15      | 경장14      | 205          | 82,784          | 203,648,148             |
| 13   | 순경16      | 경장15      | 279          | 87,869          | 294,184,742             |
| 14   | 순경17      | 경장16      | 273          | 91,937          | 301,184,957             |
| 15   | 경장17      | 경장17      | 285          | 0               | 0                       |
| 16   | 경장18      | 경장18      | 248          | 0               | 0                       |
| 17   | 경장19      | 경사18      | 205          | 256,996         | 632,209,914             |
| 18   | 경장20      | 경사19      | 210          | 264,013         | 665,313,264             |
| 19   | 경장21      | 경사20      | 175          | 270,522         | 568,096,200             |
| 20   | 경장22      | 경사21      | 129          | 276,522         | 428,056,520             |
| 21   | 경장23      | 경사22      | 98           | 281,607         | 331,170,185             |
| 22   | 경장24      | 경사23      | 102          | 286,692         | 350,911,375             |
| 23   | 경사24      | 경사24      | 85           | 0               | 0                       |
| 24   | 경사25      | 경위25      | 119          | 267,064         | 381,367,678             |
| 25   | 경사26      | 경위25      | 186          | 266,657         | 595,179,317             |
| 26   | 경사27      | 경위26      | 194          | 266,861         | 621,251,942             |
| 27   | 경사28      | 경위27      | 282          | 268,386         | 908,219,239             |
| 28   | 경사29      | 경위28      | 266          | 268,895         | 858,312,202             |
| 29   | 경사30      | 경위29      | 283          | 269,200         | 914,202,860             |
| 30   | 경위30      | 경감29      | 352          | 298,388         | 1,260,390,067           |
| 31   | 경위31      | 경감30      | 287          | 301,134         | 1,037,104,463           |
| 32   | 경위32      | 경감31      | 669          | 331,745         | 2,663,252,071           |
| 합계   |           |           |              |                 | 13,600,451,243          |

주: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라 직급 및 호봉에 차이가 발생하는 재직기간을 음영으로 표시

- 재직기간별 대상자 수, 보수 증가분, 12개월을 곱한 후 합하면 보수 부분의 추가재정소요는 136억원이고, 여기에 기관부담금 요율(2023년 기준 13.08%, 국회예산정책처 전망값)을 적용하면 기관부담금은 17억 5,600만원

## 나. 2024~2027년 추가재정소요

- 2023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보수와 기관부담금의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7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   | 2025   | 2026   | 2027   |
|-------|--------|--------|--------|--------|
| 보수    | 12,089 | 12,391 | 12,276 | 12,421 |
| 기관부담금 | 1,596  | 1,636  | 1,620  | 1,640  |
| 합계    | 13,685 | 14,027 | 13,896 | 14,061 |

### 3.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 153억 5,600만원, 2027년 140억 6,100만원 등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710억 2,5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합계     |
|-------|--------|--------|--------|--------|--------|--------|
| 보수    | 13,600 | 12,089 | 12,391 | 12,276 | 12,421 | 62,777 |
| 기관부담금 | 1,756  | 1,596  | 1,636  | 1,620  | 1,640  | 8,248  |
| 합계    | 15,356 | 13,685 | 14,027 | 13,896 | 14,061 | 71,025 |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행정비용추계과                                                |
| 과장      | 임준기                                                    |
| 추계세제분석관 | 이미연                                                    |
| 연락처     | 02-6788-4661                                           |
|         | <a href="mailto:mylee@nabo.go.kr">mylee@nabo.go.kr</a> |

---